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재정경제기획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3항 중 “은행장”을 “임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임기가 만료된 <u>은행장은 후임자가</u> <u>임명될 때까지 계</u> <u>속하여 직무를 수</u> <u>행한다.</u>	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<u>임원</u> ----- ----- ----- -.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1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박성훈 · 이인선
박대출 · 윤영석 · 최은석
배준영 · 김석기 · 신동욱
조배숙 · 김재섭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,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(안 제12조제3항).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</u>